

3.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2항의 자녀수를 선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되어 선정한다.

- 자격입증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청약통장가입 확인서(청약통장가입 해당은행에서 발급)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발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통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일 표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응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제3차 대리신청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응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소득입증 구비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혹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취업자 	* 해당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접수장소에 비치)	* 접수장소

□ 상기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0.09)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선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이상 세대원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선정의 대상에서 제외)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0. 09)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의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약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순위 경쟁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약관련 입주자저축 및 신청자격	거주 구분	접수 일자	청약접수 장소/시간	추첨 및 당첨자발표
민영 주택	1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으로 접수되고 2순위 청약은 불가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서울 특별시	2008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kr ○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u.com 	□ 일시 : 2008. 10. 24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소 및 레이안 홈페이지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1순위가 되신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1순위가 되신 분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1년이 경과한 분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9.5 포함)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세대 속한 분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없음(모든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 10.16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6개월이 경과한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8 10.17	□ 접수장소 : 신한은행 홈페이지 (www.shinhan.com) → 금융과 서비스 → 부동산 → 1순위 청약 □ 접수시간 : 08:30 ~18:00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시행서 및 금융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단, 3순위 청약은 신한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함.(청구 접수시간(09:30 ~ 16:30))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2)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75%	50%
추첨제	25%	50%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 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① 무주택기간	32	30세미만 미혼세대주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분리세대비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	6월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제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서 자동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청약신청접수 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특별공급(3자녀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보급자리 주택)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총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더라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총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1순위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금융결제원(국민은행 포함)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 민 은행 (舊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하고, 청약통장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분 • 3순위 :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분(www.shinhan.com → 금융과 서비스 → 부동산 → 3순위 청약) 	
이용 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직접 ▷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순위 청약 : (www.shinhan.com → 금융과 서비스 → 부동산 → 3순위 청약)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은행 청구 받은 청약신청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 : 신한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2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 배우자가 신청서 배우자 입증서류(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본인확인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종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 신청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200만원	창구청약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 비 서 류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8. 10. 27)이후 (평일 09:30 ~ 16:30)	청약접수한 신한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신청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 주민등록증
		제3자 대리 환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구비 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종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신한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제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아래와 같이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를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p>☐ 2008. 10. 14 (15:00) 당시 분양사무소에서 특별공급 신청자의 입회 하에 동·호수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p> <p>☐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p> <p>☐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p>
일반	동	<p>☐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신청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p> <p>☐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자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p> <p>○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p> <p>☐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p> <p>☐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p> <p>☐ 동일 신청지역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p> <p>☐ 예비당첨자 명단 및 동·호수 추첨일시는 당첨자 발표시 건물주택에 별도 공고함.</p>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점수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방법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인터넷	이용 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이용 기간	2008. 10. 24 ~ 11. 2 (10일)	
전화(ARS)	이용 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 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 번호	전화 1588-9999 (서비스코드 701)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 기간	2008. 10. 24 ~ 11. 2 (10일)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8. 10. 24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안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대상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2008. 10. 29 ~ 2008. 10. 31 (3일간)	강남 레미안갤러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17번지)	<p>○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p> <p>○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p> <p>○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때 및 과거 당첨실시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무자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p>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공통	<p>○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KB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용) 1통 ○ 인감도장</p> <p>○ 계약금(수도권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p> <p>○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p> <p>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주민등록등본1통, 초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p> <p>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증명서 1통)</p> <p>④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p> <p>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인 불가능한 자의 경우에 한함)</p> <p>⑥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계약장소에 양식 비치)</p>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p>○ 부적격자로 홍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p> <p>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p> <p>② 무허가건을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p> <p>③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p> <p>④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부적격 소명과 관계된 서류</p>
제3차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사항	<p>○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p> <p>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p> <p>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p> <p>③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p>

* 상기 제출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신청,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에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① 청약가점항목(우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②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③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④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가입한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⑤ 1,2,3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⑥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3차내 특별공급당첨자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 향후 특별공급 자격박탈 및 일반청약 자격이 제한됨.

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된 이후 14일간의 소명기간 안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와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도면,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품,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7조”에 준함.

주택소유권원 유의사항

- 건물용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과 세대대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85㎡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증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입주예정일 안내

- 입주예정일 : 2009년 7월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예정)
- (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음)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에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40,471,500,000	01282008-101-0009900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증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택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종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성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증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총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12) 주택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선택 품목(예시:홀오피로,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전어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아파트명	감리구분	업체명	감리금액	VAT구분	비고
레이안 퍼스티지	건축, 기계, 설비, 토목	(주) 동일건축	₩5,634,744,507	VAT 별도	○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 정보통신	(주) 준영이앤씨	₩530,000,000	VAT 별도	
	소방	신세기엔지니어링(주)	₩530,000,000	VAT 별도	

분양대금 납부계약 안내

■ 분양대금 납부계약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

유의사항

1. 청약 시 신청한 내용과 민영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참구청약자 : 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용(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순위가 제한됨
5.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은행 직원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7.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8.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9. 이 아파트는 실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절차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10.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12. 건물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국토해양부 주관 30145-26905)에 의거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건물주택(샘플하우스)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토록 함
13.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건물주택(샘플하우스),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 별 위치, 단지레벨차에 따른 용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4. 입면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평,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APT 모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15.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철자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16.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에는 입주자 사전검점시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7.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18. 본 아파트의 기능 및 구조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19. 마감재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건물주택(샘플하우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 일반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시대 평면도, 면적, 치수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재건축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21.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신청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분양가를 산정함
22.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23.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24.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인 · 허가과정 또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5.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됨

26.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27.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단지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8.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안전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29. 아파트의 주차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30. 인·허가 과정에 따라 대지경계선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31.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2.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33.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4. 지상으로가 없는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함
35. 주변 단지의 신축, 지구내 시설물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6. 인허가기관의 협의시 필요에 따라 단지 주변에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37. 본 단지는 반포로의 고가차도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차량 소음이 발생하며, 실내에도 소음 및 분진 등이 유입될 수 있음. 특히 109동, 115동, 116동, 119동, 120동, 124동은 고가차도에 의한 영향이 가중될 수 있음
38.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실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9.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상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40. 상가 주차장 이용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아파트 출구를 상가와 공동 사용함
41. 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이나 설계변경에 의해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42. 동축공구와 서측공구는 하나의 단지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공구가 분리됨에 따라 입주 후 관리비는 각각의 단지별로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지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차이로 인하여 관리비가 차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
43. 부대복리시설(아파트 지하층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은 입주인 전체(동측단지, 서측단지)의 공동시설물로서 인허가기관의 인허가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실 시공시 계획이 변경되어 질 수 있음
44. 103동, 115동, 주공상가(가칭) 후면, 124동, 125동 인근에 아파트 정화조 출입구가 설치 되며, 102동, 120동, 124동 및 125동을 포함한 주변동에는 정화조 배기탑이 옥상에 설치되고 이로 인하여 인근세대에 오수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45. 아파트단지의 동축공구와 서측공구는 폭25m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 향후 허가관청의 허가시 육교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육교주변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육교가 대지내부에 설치시 이로 인한 도로점용료 등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음
46. 신반포로변에 지하철 9호선의 진출입구, 환기구 등이 설치됨에 따라 109동 후면에 지상권이 설정되며, 지하철 9호선 정화조 설치로 인해 103동 후면에 지상권이 설정됨
47. 남측 하수유입암거의 확장시설에 따라 121동과 124동 사이 일부부지에 하수유입암거시설 등이 설치됨
48. 재건축 전에 본 사업부지와 세화여중교 부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는 본 사업부지에 편입되며, 세화여중교의 통학로확보 및 비상차량의 출입로를 확보하여 주기 위해 126동 및 127동의 주위에 보도를 겸한 차도로 계획되어있고, 이로 인한 소음의 발생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49. 잠원초등학교의 주위에 설치되는 근린공원은 우리단지의 소유가 아니며, 울타리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외부인출입 등에 의한 소음의 발생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50. 127동 앞 및 109동과 주공상가 사이에 설치되는 어린이 공원은 공개공지임
51. 사업승인조건에 따른 현재 반포전에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는 보자겸용 교량은 보행자 전용교량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미주아파트와 잠원초등학교 사이의 폭 15m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임
52. 조경계획, 수목식재의 방법이나 수종, 조경시설물 등은 단지의 조경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3. 신반포로 및 신설되는 폭 25m에 의해 신설되는 4거리의 남측차우 모서리에, 차량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완화차선이 설치됨
54. 111동과 112동 사이의 후면에 마을버스나 카풀 승차장이 설치될 수도 있음
55. 117동부터 119동사이의 부지와 121동부터 124동사이의 새로이 계획되는 부지는 기존 대지의 현황을 고려 하여 약4m의 고저차(EL+12.0 / EL+16.0)가 발생되며, 고저차에 의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육교가 설치되고 118동 및 119동 사이의 정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음
56.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의 표현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본 공사시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 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른 대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57. 건보주택(샘플하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음. 단,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유사한 수준의 다른 제품 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58. 본 사업부지에 접하고 있는 신반포로 및 반포로는 각각 5m 및 3m Setback되어 도로에 편입되며, 당 사업부지에서 제외됨
59. 동축공구의 주차대수는 4,034대, 서측공구의 주차대수는 334대이나 양측 공구 모두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하였으며, 동측, 서측공구 상호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0. 동축공구와 서측공구 사이는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연결이 불가하므로 전기관련 일부시스템이 동측, 서측에 각각 설치되며 세대통화 및 방송이 상호 불가함
61. 전기적인 모든 제어시스템은 동축공구와 서측공구가 별도로 제어됨(화재수신반, 방송시스템, 경관조명 제어, 외등제어 등)
62. 옥탑 경관조명으로 인한 아파트 상층세대 및 지상층 경관조명으로 인한 일부세대에 야간 안면방해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명

- 사업주체명 :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인번호 : 110271-0010087)
- 시공업체명 : 삼성물산㈜ 건설부문(주택건설시정업 지정번호 제48호)

건보주택 안내

- 현장 샘플하우스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레미안 퍼스티지 [☎ 02-765-3308, 1588-3588]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레미안 퍼스티지 현장 약도 |

